

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「청년기본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의원

- 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이상욱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23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「청년기본법」 개정 촉구 건
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을 ‘19세 이상 34세 이하
인 사람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조
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
한 혼선 및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
니다.
 -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각 조례에서 청년 나이의 상
한 기준을 39세(전남 45세)로 정하고 있으며, 저출산

·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「청년기본법」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